



세무조사 가이드북  
PDF파일 내려받기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 주식변동조사

유 형  
B

# 세무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가이드북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세무조사 가이드북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지침서입니다.



[ 세무조사 절차 안내 영상 ]

## CONTENTS

### 3 납세자권리현장

### 4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5 세무조사 진행 과정별 확인할 사항

### 6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 14 세무조사의 마지막까지 배려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마무리

### 17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고객평가

### 24 기타 안내말씀



##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국세청장

## 세무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세무조사 시작·진행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 후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영세자영업자 등\*이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참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13 '세무조사 참관 제도' 참고
- 과장 면담 제도와 납세자 소명서 제출을 통해 의문·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종료

-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리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일시적 자금압박 등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 권리구제 및 평가

-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조사공무원의 절차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고 불만·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조사공무원의 청렴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17~20 '권리구제 및 고객평가 제도' 참고

조사관서 전화번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 :

## 세무조사 진행과정별 확인할 사항

|                                                                                                         | 주요 진행절차           | 확인할 사항                                                                                                                             |
|---------------------------------------------------------------------------------------------------------|-------------------|------------------------------------------------------------------------------------------------------------------------------------|
| <br><b>세무조사 시작전</b>    | 세무조사<br>개시 통지서 교부 | 통지서, 납세자권리현장                                                                                                                       |
|                                                                                                         | 세무조사<br>오리엔테이션    | (시기) 세무조사 개시일<br>(내용)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범위, 권리보호 제도, 준비사항 등                                                                             |
| <br><b>세무조사 시작·진행</b> | 세무조사 시작           |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조사원증, 공무원증), 청렴서약서 작성, 세무대리인 위임장 제출 등                                                                                  |
|                                                                                                         |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등 실시 사유, 납세자의 동의 필요, 납세자 요청 시 14일 이내에 반환, 조사범위 외 일시보관 금지                                                               |
|                                                                                                         | 자료제출·해명요구         | 조사범위 외 요구 및 조사 금지(단, 범위확대 통지 시 가능), 조사 과장 면담, 소명서 제출 등을 통해 충분한 해명기회 부여                                                             |
|                                                                                                         |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중지   | 통지서(통지 없이 임의로 기간연장·범위확대 등 금지), 통지내용 (기간연장·범위확대·조사중지 사유 확인)                                                                         |
|                                                                                                         | 홈택스에서 조사 진행 상황 조회 |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사 진행 상황(조사 통지, 착수, 기간 연장, 범위확대, 중지, 결과통지 등)을 조회가능                                                               |
|                                                                                                         | 납세자 권리보호          |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 또는 세무조사 참관 신청**<br>* 세무조사 선정이나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경우<br>** 영세자영업자 등이 조사팀의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파악 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 중간설명              | 조사 진행내용, 향후 조사방향,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팀의 검토 결과 등                                                                                            |
| <br><b>세무조사 종료</b>   | 조사결과 설명회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직접 교부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                                                        |
|                                                                                                         | 세무조사 결과통지         | 조사내용, 결정·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 및 사유 등(조사 결과에 대해 수정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복청구 가능)                                                            |
|                                                                                                         | 납세자의 평가           |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작성·회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개선의견 청취(홈택스·손택스 또는 유선)                                                                             |

## 01

세무조사의  
시작과 진행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드리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세무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권익은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첫날 해야 할 5 가지



## 1.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조사착수시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수령하십시오.

「세무조사 개시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  
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3.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십시오.

납세자권리현장 요지를 낭독하여 납세자권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 4.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전자)장부·서류 등에 대한 일시 보관 요청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상세한 선정사유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 신청서식 내려받기 ]

##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공무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관련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귀하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세무대리인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참여 및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하고 납세자 의견을 경청합니다.

☑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립니다.

- 과세 쟁점에 대해 조사팀과 이견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견해를 과장이나 팀장에게 서면(납세자 소명서) 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과장 면담 제도」를 통해 조사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조사과정에서 의문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원하시면 조사팀장에게 구두로 신청하거나 조사과장의 이메일 또는 사무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_\_\_\_\_ , ☎ \_\_\_\_\_ )

세무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제공받고 있습니다.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

- 금융거래 제공 사실을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나,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기간이 지난 후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세무조사 종료 후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장부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이 일시보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이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보관증」,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및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하고 있으며, 조사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14일 이후에도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시 보관중인 장부·서류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23 서식참조)

■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등은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모두 반환하고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 조사공무원의 질문, 조사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8조)

“

#### Q. 조사공무원의 장부 등 일시보관 요청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른 일시보관 절차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한 임의조사 절차이므로 납세자의 판단을 우선시 합니다. 다만, 조세범칙혐의가 있는 납세자가 일시보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공무원은 일반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겠습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조사범위(세목, 과세기간)와 조사기간은 「세무조사 개시 통지」에 기재하여 알려드립니다.

- ☑ 다만, 조사진행 도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납세자가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외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범위 확대와 조사기간 연장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 조사범위 확대와 조사기간 연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사범위 등을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에 의하여 문서로 통보해드리며, 조사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에 의하여 문서로 통보해드립니다.



#### ☑ 조사범위 확대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 조사기간 연장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 납세자의 질병, 사업상 심한 어려움 등 **조사 중지사유(아래의 1~4)**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가 중지되는 경우 「세무조사 중지 통지」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중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새로운 자료 요구는 금지되나,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해명자료를 수보하거나,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가능

”

- ☑ 세무조사 중지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9)

1



천재지변

2



화재·그 밖의 재해

3



질병·장기출장

4



장부 등 압수·영치

5.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6.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경우
7.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8.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등
9.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 조사중지 기간이 경과하거나 중지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중지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하여 잔여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  
안내 영상 ]



[ 납세자 권익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참관제도

### '24년 참관제도 확대 시행

- 참관제도 신청기한을 조사종결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횟수를 **최대 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현장에 참관하여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하는 등 도움을 드립니다.

### ☑ 신청대상 및 요건

(권리보호요청인)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

※ 무신고자 및 소비성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을 영위하거나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조사종결 3일전까지

(신청방법)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

☑ 세무조사 참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 → 3번)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권리보호요청 소개  
바로가기 ]



[ 권리보호요청  
신청안내 바로가기 ]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

☑ 조사공무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 → 3번)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세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세무조사 중 세무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 권리보호 요청과 함께 조사팀 교체도 신청할 수 있음
4.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국제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유 없이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하는 행위  
\* 중소규모 :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최대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미만
5. 조사목적과 관련없는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하거나, 납세자의 장부·서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부·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을 하고,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을 취소·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무조사 진행 상황 조회」

☑ 조사 착수, 기간 연장, 조사 종결 등 조사 진행 상황을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상단) MY 홈택스 - (좌측) 과세자료·세무조사 - (우측) 세무조사 현황(관리)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 02

세무조사의  
마무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시적인 자금압박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세무조사의 마지막까지  
배려하겠습니다





[ 신청서식 내려받기 ]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종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해드립니다.

- 세목별 결정(경정) 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에 대한 근거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내용,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등 세무조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보내드립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기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23 서식참조)

☑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 또는 인터넷 뱅킹·ARS·ATM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를 통하여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국세납부 사이트([www.cardrotax.kr](http://www.cardrotax.kr)) 또는 세무서 수납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여도 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24.6.1. 현재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별 할부시 무이자 기간은 신용카드 국세납부 사이트([www.cardrotax.kr](http://www.cardrotax.kr))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 국세전자납부 안내 ]



[ 신용카드납부 안내 ]



[ 세금포인트 안내 바로가기 ]



[ 세금포인트 안내 영상 ]

##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1



재난·도난

2



부도·도산 등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상중(喪中)인 경우

4

1~3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또는 체납된 국세의 독촉(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 납세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이 7천만원(모범납세자\*는 5억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국세청장·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 및 훈·포장수상자는 표창일(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표창수상자는 2년간 면제

-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이용(개인은 1점부터 사용 가능)하여 납세담보 면제를 신청한 경우 포인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억원 한도)에 대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납세담보 제공 면제 금액= Min (적립된 포인트×10만원, 연간 5억원)

## 03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고객평가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로부터 평가를 받겠습니다.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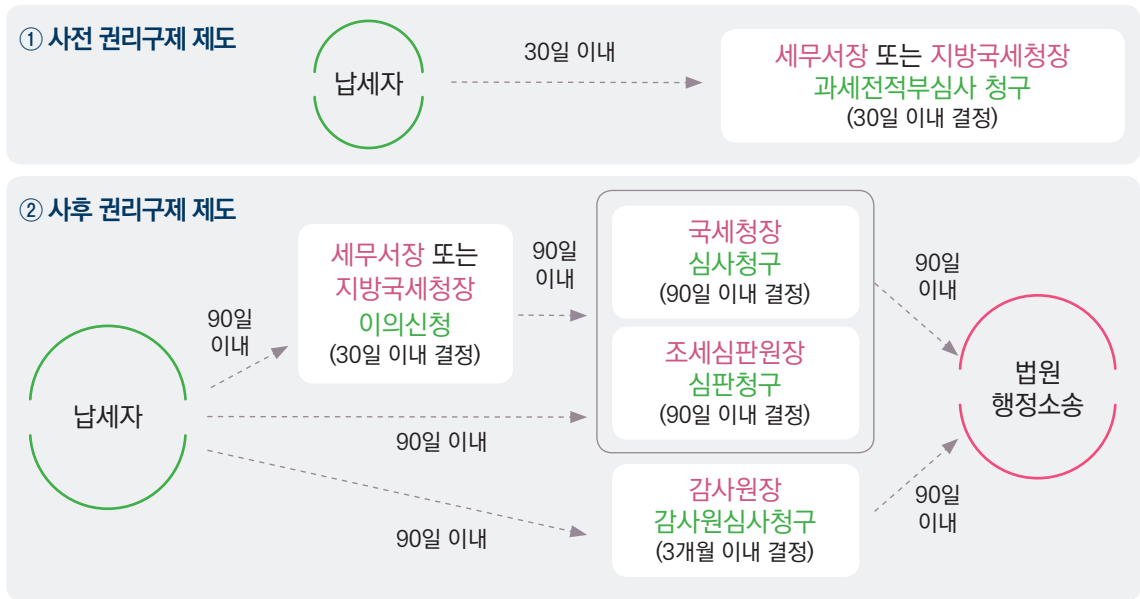


[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안내 바로가기 ]

##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절차도 〉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과세전적부심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알려드립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81조)

#### ☑ 이의신청

- 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알려드립니다.

#### ☑ 심사·심판청구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국무총리실 소속)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고지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고지서를 받거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9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알려드립니다.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결정내용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 행정소송

-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조사관서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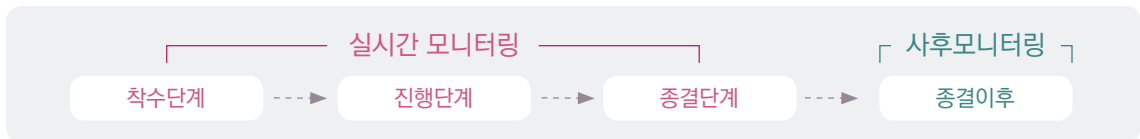
-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적/이의/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국선대리인 신청 안내 ]

## 고객인 납세자로부터 평가를 받겠습니다

납세자의 목소리는  
국세행정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 (실시간) 세무조사를 착수·진행·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부터 표본선정 안내를 받은 납세자만 작성·제출합니다.

-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 과정 상의 불편·불만 사항을 경청합니다.
- 또한 세무조사 모니터링 중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하여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시성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에게 최종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하여 평가를 요청합니다.

-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조사공무원의 친절성과 청렴성을 납세자로부터 평가받고 세무조사 개선 의견을 청취합니다.
-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세무조사 모니터링에 편리하게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후(실시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우편이나 FAX 또는 E-mail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체크리스트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절취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가능합니다. (p.21~23 서식참조)

#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

| 구분                                                                                                                                      | 조사절차 준수 여부 설문                                                                                      | 답변 |     |      |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착수·진행·종결)할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니 ‘예’, ‘아니오’로 답변하여 주시고, 불만·개선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착수 단계                                                                                                                                   | ① (사전통지 대상)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송달받았습니까?<br>(사전통지 생략)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교부받았습니까? |    |     |      |
|                                                                                                                                         | ② 조사공무원이 조사원증과 신분증을 제시하였습니까?                                                                       |    |     |      |
|                                                                                                                                         | ③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받고, 권리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까?                                                             |    |     |      |
|                                                                                                                                         | ④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     |      |
|                                                                                                                                         | ⑤ 조사공무원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한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    |     |      |
| 진행 단계                                                                                                                                   | ⑥ 조사공무원이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까?                                                      |    |     |      |
|                                                                                                                                         | ⑦ 조사공무원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에 의해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까?                                                           |    |     |      |
|                                                                                                                                         | ⑧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는 조사내용과 관련된 자료입니까?                                                              |    |     |      |
|                                                                                                                                         | ⑨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내용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까?                                                            |    |     |      |
|                                                                                                                                         | ⑩ 조사공무원이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    |     |      |
| 종결 단계                                                                                                                                   | ⑪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또는 조사중지를 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받았습니까?                                             |    |     |      |
|                                                                                                                                         | ⑫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또는 조사중지를 신청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까?                                                       |    |     |      |
|                                                                                                                                         | ⑬ 조사가 중지되었는데도 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    |     |      |
|                                                                                                                                         | ⑭ 조사대상 범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 신고·납부하도록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까?                                                        |    |     |      |
|                                                                                                                                         | ⑮ 일시보관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반환받았습니까?                                                           |    |     |      |
| 불만·개선 의견                                                                                                                                |                                                                                                    |    |     |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부터 표본 선정 안내를 받은 납세자만 작성·제출합니다.





[ 신청서식 내려받기 ]

## 각종 신청서 등 서식



[ 국세청 상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 다음의 각종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초기화면 - 정보공개(우측상단) - 사전 정보 공표 -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세무조사 가이드북 - 전체서식 다운받기]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서 식 명                        | 비고 |
|----|------------------------------|----|
| 1  | 세무대리인 위임장                    |    |
| 2  |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               |    |
| 3  |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    |
| 4  | 조기결정신청서                      |    |
| 5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                 |    |
| 6  | 국세·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    |
| 7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
| 8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             |    |
| 9  | 이의신청서                        |    |
| 10 | 심사청구서                        |    |
| 11 | 심판청구서                        |    |
| 12 |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    |
| 13 |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               |    |
| 14 |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                |    |
| 15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    |
| 16 |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    |
| 17 | 세무조사 참관 신청 취하서               |    |

- ◆ 세무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창구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문의사항    | 기관부서명         | 상담창구 또는 홈페이지                                                      |
|---------|---------------|-------------------------------------------------------------------|
| 종합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 <a href="http://www.nts.go.kr">http://www.nts.go.kr</a>           |
| 법령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a href="http://txsi.hometax.go.kr">http://txsi.hometax.go.kr</a> |
| 세금 신고납부 | 국세청 홈택스       | <a href="http://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a>   |
| 종합상담    | 국세청 126세미레콜센터 | ☎(국번없이) 126                                                       |

## 기타 안내말씀

- ☑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영활동이나 기업이미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귀하(귀사)께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사적인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재차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귀하(귀사)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공무원에게 사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사적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조사과장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하거나 지방청 감사관실(☎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부담완화와 조사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반드시 협조 바랍니다.



### 조사사무실 설치 간소화

별도 휴게공간, 응접용 소파, TV, 냉장고(정수기 제외) 등 설치 금지



### 간식·사무용품 등 제공 금지

간식, 차·음료, 슬리퍼, 치약·칫솔, 화장품 등 제공 금지  
필기도구, 메모지, 계산기, 세법전 등 사무용품 제공 금지



### 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편의제공 금지

회사 구내식당 식권 무료 또는 할인 제공, 공장 등 방문 시 회사 차량 제공,  
유료주차장을 조사팀 출·퇴근용으로 무료 제공 등 금지



### 조사공무원과의 식사 등 금지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 · 주식변동조사

유 형  
B

# 세무조사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가이드북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  
[www.nts.go.kr](http://www.nts.go.kr)